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의안번호

۴۴

제출년월일 : 1998.10.

제출자 : 이경진의원외6명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선출 토록 되어 있었으나
- 1997.12.17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서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중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개정됨에 따라
-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규정(의회훈령 제1호)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규정(의회훈령 제1호)전면폐지

3. 참고사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전·후대비표

의회훈령 제 호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규정폐지규정안

평창군의회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규정을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전·후대비표

법조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 (교육위원 의선출)	<p>①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 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 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③ 교육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육단체 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에 근무하는 교원중에서 추천한 교원인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 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p>